仲裁硏究, 第 16 卷 第 3 號
2006년 12월 1일 발행, pp.191-216

논문접수일 2006. 3. 3
게재확정일 2006. 11. 20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에 따른 활성화 방안*

-분쟁방지를 위한 사전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A Study to Promote the EC Collabo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Preemptive Dispute Resolution Policies

최 용 록** Yong-Rok Choi

〈목 차〉

Ⅰ. 서 론
Ⅱ.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타당성과 과제
Ⅲ.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Ⅳ. 결 론

주제어 : 남북 전자상거래, 협업 개발, 남북전자상거래위원회, 남북전자상거래사업단

* 이 논문은 2006. 2. 23. 한국중재학회의 춘계중재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며, 사회 및 토론을 통해 따듯한 격려와 제언을 해주신 이 강빈 교수님과 최 혁준 박사께 감사를 드린다.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yrchoi@inha.ac.kr)

I. 서 론

북한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2006년 10월 9일 핵폭발시험에 돌입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핵문제가 북한이 원하는 북미단독대화를 미국이 거부하며 암초에 부딪치고 여기에 송금동결로 이어지는 금융제재로 결국 사상초유의 핵위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비롯된 급속한 남북 경협은 2005년 그 교역규모가 10억달러는 넘어서는 등 명실공이 새로운 경협의 시대가 열리는가 싶더니 북핵 위기는 경협을 위주로 하는 남한의 햇볕정책이 심각한 기로로 몰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적으로야 북한의 잘못된 정책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제살 도려내기 식으로 북한을 몰아붙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 기하급수적인 통일비용 증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나치게 '퍼주기식' 대북지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경협마저 무시한다면 통일 한국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격이 될 것은 불을 보듯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경제적 제재조차도 선별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21세기 들어 일본의 대북한 영향력이 무역규모와 더불어 급속히 축소되면서 중국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는 바, 북핵 관련 경제제재를 통해 반사 이익을 가장 확실하게 누리게 될 국가가 중국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한국 경제라는 점에서 UN안보리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적절하게 원용돼야 한다.[1)]

지난해 남북교역은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룩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남북교역량이 6억6808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하는 등 순항을 계속해왔다. 여기에 개성공단의 역할이

1) 최용록, "대북제재 신중한 적용 필요", 전자신문 2006년 10월 17일자 열린마당 칼럼.

결정적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성공단사업의 거래동향을 보면 7월까지 1억5501만달러가 거래돼 평균을 훨씬 웃도는 59.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입주업체의 사업확장전략에 따라 개성공단 내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와 공단개발을 위한 건설중장비·기계류의 반출이 증가하고 있고 토지개발공사의 개성공단 2차 분양도 무리없이 진행되면서 큰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야말로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만 인정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남북협력의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이에 따른 안보리 경제제재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상업적 교역에서 실질적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경제교류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협력 기조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정부나 관련 사업자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UN결의에 따른 경제제재가 지금 당장 개성공단이나 남북IT교류협력 사업으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안보리 제재위원회나 미국·일본의 혹독한 감시하에서는 자유로운 경제교류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균형잡힌 시각과 적절한 외교적 수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UN 회원국으로서, 북핵문제의 첨예한 당사자로서, 또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재노력에 동참하면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경협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속도조절, 철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지나치게 의존한 교류협력을 벗어나 남북한 전자상거래 등 IT인프라를 이용한 새로운 협력사업 개발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 향후 남북 경협은 국제적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경협사업의 탄력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경제교류 및 협력은 필연적으로 통신부문에서의 협력을 수반하며, 실제로 독일통일 이후 가장 개선요구가 높았던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통신이었기 때문이다.[2]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남북경협의 의의는 우선 사이버공간이라는 '개방과 통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웹' 상에서 남북교류 및 협력의 기초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교류협력 및 통일비용을 절감해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정책적인 관심이나 학술적인 흥미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결고리의 문제(Missing Link)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세계적인 IT강국이라 하면서도 이러한 IT를 활용하는 산업이나 경제활동에서는 소극적 수용국가 (Passive Country)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시장수요와 정책의지가 연결되지 못한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3]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IT산업과 기술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상생협력의 장으로서 남북한 전자상거래 공동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남북경제협력분야에서 가장 타당성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경제협력의 촉매역할을 담당하게 될 남북전자상거래 추진의 전개방향, 즉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고,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분쟁과 갈등의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제시하는데 있다.

II.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타당성과 과제

1.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도입 배경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

2) 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현황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 11권 8호, 1999. 5. p. 31.

3) 최용록, "전자무역지원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7권4호, 2005.12. p.275.

출/반입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지칭한다.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988년 한국정부의 7.7선언에 따라 분단 이후 재개된 남북교역이 91년 1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005년에는 10억5576만 달러를 기록했다.(표 1 참조) 이 같은 증가는 개성공단 개발의 진전에 힘입은 것으로,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2004년 4169만 달러(전체 교역의 6%)에서 지난해 1억7674만 달러(16.7%)로 늘었다. 이와 같이 특징지역 중심의 단계별 협력사업의 확대는 제한된 협력의 사업타당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남북한 전자상거래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다. 남북교역의 가장 중요한 제약요건은 정치적 동기로[4] 2005년 핵문제의 해빙분위기를 바탕으로 급격한 교역신장세를 나타낸 것은 남북간에 잠재된 경제적 동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표 1〉 연도별 남북 교역현황

(단위 : 미화 천달러, %)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장률(금액)
1995	976	222,855	1,668	64,436	2,644	287,291	32.28%
1999	3,089	121,604	3,421	211,832	6,510	333,437	33.44
2000	3,952	152,373	3,442	272,775	7,394	425,148	21.57
2001	4,720	176,170	3,034	226,787	7,754	402,957	-5.51
2002	5,023	271,575	3,773	370,155	8,796	642,730	37.21
2003	6,356	289,252	4,853	434,965	11,209	724,217	11.39
2004	5,940	258,039	6,953	439,001	12,893	697,040	-3.90
2005	9,337	340,281	11,878	715,472	21,215	1,055,754	51.5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내용을 기초로 재작성.

4) 중앙일보 2005년 12월 23일자.

그러나 남북교역이 한국의 전체 무역에 차지한 비중은 2005년 0.19%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남북 교역은 북한이 남북한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외 중간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직도 교역의 85%이상이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도입 타당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배경이 된다.[5] 간접교역은 중개수수료는 물론 물류비와 같은 부대비용의 급증으로 남북교역의 규모를 억제하므로 개성공단과 같은 특정지역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특정 경로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직접교역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 정보통신(IT)산업의 성장률 추이와 GDP 경제성장 기여도

	1996~1999 평균	2000~2003 평균	2004	2005p
GDP성장률	4.0	5.35	4.6	4.5
IT산업의 성장률	26.1	15.7	14.4	14.4
경제성장 기여도	2.1	2.18	2.5	2.1
IT산업의 GDP비중	9.0	16.35	14.2	15.6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에서 발췌.(2005년 자료는 3/4분기 기준 추계치)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제 구조개편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경제나 후발개발도상국이면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 역시 최근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정보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선진 정보기술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산업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연평균 15.7% 성장하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5) 전자상거래의 익명성, 포탈의 통합성 등은 기존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수용가능하면서도 북한의 간접교역을 직접교역으로 전환하는 무역대체적 경비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동기간 비IT산업의 성장률이 1.8%에 그쳤다는 점과 비교해 IT산업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IT산업의 GDP기여도가 미국전체 2003년 2.9%의 27.6%에 해당하는 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회복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것도 IT투자를 통한 생산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6]

한편, 남북한 전자상거래는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통제된 개방경제시스템'으로써 체제적인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충시켜주며 간접거래로 인한 높은 중간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를 통해 준직접적인 남북교역을 단계별로 확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협력의 기반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 전자상거래의 사업타당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조성의 기능과 진입장벽의 제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업타당성의 세 가지 기준인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의 시각에서 남북전자상거래는 초기단계는 거래상대방의 탐색기능에 초점을 둔 웹마케팅에서 시작하여 점차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무역자동화와 같은 원스톱서비스로 옮겨감으로써 북한의 우려를 불식하고 단계적인 경험축적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남북경협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부문의 교류협력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남북한 생산품의 교역과 정보제공, 및 중개 등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경협의 1단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생산부문에서의 협력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렴하지만 양질의 노동력과 결합되는 단계이다. 경협의 마지막 단계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대한 경협부문이다. 하부구조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7] 따라서 서비스 부문과 생산부문에서의 경협이 진행되면 될수록

6) 최용록,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신생산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논집」, 19권 2호, 2005.6. pp.1-16.

7) 양승원, "IT FOCUS : 남북 IT 경협 현황과 전망 분석," 「소프트뱅크리서치 리포트 SBR-01-3-001」 (2001.4.1) 참조하여 재구성.

하부구조에 대한 경협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지원해주는 시장조성 기능으로서의 전자상거래는 남북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요소라 할 것이다.

〈그림 1〉 정보통신산업의 경협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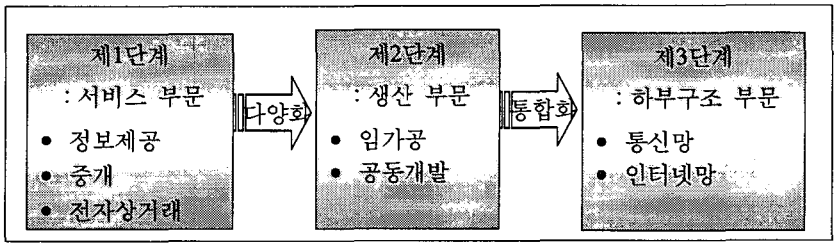

남북 전자상거래의 단계별 경협모형은 그 사업 타당성이 높고,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남북한 거래상의 장벽을 해소하는 단계별 발전을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폐쇄성과 경제적인 개방성간의 균형과 조화를 찾기 위한 북한 정부에 매우 유용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과제

북한의 전화 및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성형(星型)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중형 통신망은 여러 지역 및 주요 산업기반들을 통제의 용이성 차원에서 연결하여 행정목적 내지는 주민들에게 당국의 정책을 전파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남북 경협의 주체로써 북한의 전자상거래 도입의 기회와 위험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북한은 1990년대말 그동안 통제 중심의 통신정책에서 정보화를 통한 혁신적 도약, 정보화를 통한 국가 및 사회통제의 체계화, IT

산업발전이 체제의 존립과 병행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에너지절약형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정책 전환을 추진하였고, 이는 전자상거래 도입의 중요한 기회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정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의 발전 수준이 현저히 낮은 단계에 있다. 따라서 부분적인 개방형 인터넷에 의한 남북 전자상거래를 북한의 광역 내부망(Wide Area Intranet)과 연결하여 특정 기업 및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전자상거래로 시작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가는 길이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디지털 지도층이라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8] 대외적 자원으로서의 인터넷 활용을 위해 정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5년 북한 체제선전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www.kimsoft.com)가 시작되었고,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부터 사이트의 점진적인 확산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외국의 인터넷서버를 이용한 북한관련 정보제공 웹사이트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상업용으로 심화,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9] 이러한 인터넷 운영체제의 변화는 1999년 노동당 공식인터넷 사이트인 조선인포뱅크의 설립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인포뱅크의 운영주체는 북한의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범태)으로 범태에 의한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10]

8) 김기영 · 윤덕민,, "북한의 인터넷 구축과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 건설에 관한 연구" (http : //www.gcomin.co.kr/data/183/ F182522.html)

9) 2006년 1월 1일을 기하여 북한은 북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예술작품, 전자도서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내나라'(www.kcckp.net)를 개설하여 신용카드 등을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이트는 조선무역과 달리 특정지역에 한해 추진된다.(연합뉴스, 2005. .1.1일자)

10) 제성호, 「KISDI이슈리포트-남북 인터넷교류와 남북한 교류협력법 개정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7.21. p.9.

〈표 3〉 북한의 전자상거래 관련 사이트

서버등록 국가	사이트명	인터넷주소	개설	개설목적	비 고
일 본	조선통신	www.kena.co.jp	97.1	정보제공/체제선전	
	조선신보	www.korea-np.co.jp	97.2	정보제공/체제선전	조총련
	조선관광	www.knta.com	02.1	상업용	
	우리민족끼리	www.uriminxokkiri.com	03.4	체제선전	
중 국	조선인포뱅크	www.dprkorea.com	99.10	상업용	범태
	평양 Times	www.time.dprkorea.com	00.7	정보제공/체제선전	범태
	실리은행	www.silibank.com	01.9	상업용	메일 서비스
	조선우호협회	www.korea-dpr.com	03.7	상업용	
오스트리아	조선무역	www.dprkorea-trade.com	02.12	상업용	대사관에서 운용
스위스	천리마그룹	www.chollima-group.com	03.2	상업용	현재 폐쇄
싱가포르	평양국제정보센터	www.pic-international.com	03.11	상업용	

자료 : 남성욱, "인터넷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친(親)북한 인터넷 사이트 현황",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제1호, 2000. 기초로 재작성.

셋째로, 전자상거래의 심리적,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안정한 거래환경과 법제도의 미비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은 인터넷 활용의 경우에는 정보화의 급속 확산에 따른 체제불안도 가중되어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간 조화와 균형이 깨지기 쉬운 염려가 상존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은 북한정부의 심각한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로 지적할 것은 북한이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 및 구성요소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전자상거래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요소로는 정부의 정책적 환경과 기업의 경영전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하부인프라 구조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에서 북한은 특히 하드웨어와 같은 기본요소가 매우 취약하여 독자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기위한 인력 부족 및 경험미숙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초기단계인 북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은 차별적 특성이 강조되는 웹마케팅이나 기관간 협업적 활동을 강조하는 무역자동화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할 것이다.[11] 따라서 북한의 전자상거래 도입은 시대적 필요에 의한 북한 정부의 인식과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점차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나,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심리적, 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

3. 남한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과제

남한의 전자상거래를 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환경과 기업의 경영전략, 하부인프라 구조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 모든 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먼저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는 2005년 12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웹무역 마케팅 및 무역자동화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을 제도화하였고,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무역중개 내지 무역거래알

11) 최용록, "전자무역지원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7권4호, 2005.12. p.273

선 사이트들이 가상공간에 개설된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12]. 남한의 경우 2004년 3/4분기(통계청) 현재 241개의 e-마켓플레이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e-무역상사로 지정된 EC21, ECplaza, Tpage 등 대표적인 국내 무역 e-마켓플레이스들은 공공 부문의 무역 지원 사이트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정부 지정 e-무역상사 수출동향

(단위 : 백만원)

수혜기업 현황	'02년 수출액	'03 수출액	'04수출액
'03년 (150개사)	37,721	40,478	58,804
전년대비 증가율	-	7.3%	45.3%
'04년 (200개사)	-	49,141	66,584
전년대비 증가율	-	-	35.5%

자료 : 산업자원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비즈니스백서」, 2005. p. 217.

남한이 전자무역이라는 특정분야를 육성해 온 것은 국가간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법제적 문제, 표준화와 같은 기술적 문제들이 혼용되어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은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으나 전자무역의 정책과 기업전략 및 인프라간에 심각한 컨설토크라시(Consultocracy)[13]

12) 본 절에서 남한의 전자상거래를 대신하여 "전자무역"으로 국한시킨 것은 전자상거래의 대외 활동을 대외거래법 2조6호에서 "전자무역"으로 지칭하여 국내 전자상거래와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의 교역을 "무역"으로 이해하려는 데 비해, 한국정부는 국가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거래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무역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자 한다.

13) Consultocracy란 자문과 지원을 맡는 중계기관(Consulting)과 자의적 활동(Autocracy)의 합성어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이나 최종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기술적 우월성이

에 의한 활용상 연결고리의 부재(Missing Link on Governance)는 남한의 전시적, 형식적 전자무역정책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대외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이트 개설 지원과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과 기업의 인식부족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실질적 진입장벽은 커다란 단점이다. 본 연구는 남북 전자상거래의 주도적 주체를 남한의 기업과 정부에 두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에서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도입에 따르는 심리적, 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 제도적인 심각한 거래제약조건의 부분적 규제 완화와 전자상거래와 같은 특정 활동에 대한 예외조치가 필요하다.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애로 볼 수 있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교류협력법')에 명시된 교류협력사업 승인제도 · 방북증명서제도 ·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제도이다. 이 법제는 남북한간 상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기업 대 정부, 특정 또는 불특정기업간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개인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한 주민접촉 사전승인, 방북증명서 등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14] 이와 같은 현재 법제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상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전자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된다. 둘째로 전자상거래 허용품목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고도화나 남북전자상거래협력에서는 전략물자의 반출입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전략물자의 반출입문제가 장애요소가 된

나 첨단 기법을 강조하는 공급자 위주의 중계기관에 의한 시장왜곡현상을 말한다. (최용록,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전자무역 솔루션의 효과적 활용방안",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8권 2호, 2004. pp.285-300. 참조)

14) 박정원, 「북한의 IT법제와 남북 IT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pp.29-30.

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들이 소위 불량국가나 테러단체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전략물자 수출입통제체제를 형성·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다자간 수출입 통제체제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정하는 통제대상 물자와 기술을 수용하여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다.[15] 통일부도 1990년부터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남북경협에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보안,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와 관련기술을 대북반출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16] 이러한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거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세 째로 남북 경제협력 추진의 복잡한 절차에 대한 체계적 단일화와

15)

구분	바세나르체제 (Wassenaar Arrangement : WA)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 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NSG Part I	NSG Part 2		
설립 목적	재래식 무기 및 제조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COCOM)	1974년 인도 핵실험 계기 핵원료물질 통제	1991년 이라크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중용도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강화	이란·이라크전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생화학 무기원료 및 제조장비 수출통제	1980년대 초 일부 개도국의 미사일 개발로 미사일 및 동 생산설비 수출통제
설립 연도 (한국 가입)	1996 (1996)	1978 (1995)	1992 (1995)	1984 (1996)	1987 (2001)
가입국	33	40	40	33	33

16) 홍익풍,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경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2004.10. pp.41-42.

효과적인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로 분절된 접근방식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업무 추진속도가 늦어지고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한다. 남북교역이 전자상거래로 근접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 e-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접근방식이 요구되지만 현재 남북교역은 정책의 중복, 다원적 절차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심각한 약점 내지는 진입장벽으로 부각된다.[17] 특히 이러한 남북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학문적 관심이나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컨설토크라시(Consultocracy)에 빠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주체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18]

마지막으로 북한관련 정보 및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의 해소가 필요하다. 남북교역에서 남한은 제한되고 한정적인 북한의 정보만을 받으며 이 역시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일부 민간 연구소, 대북 관련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대북 진출 프로세서가 일반적인 무역거래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여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겪을 것이다.

Ⅲ.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1. 협업적 개발기구를 통한 구조적 대응방안

17) 이충배외, 전게서. p.148.

18) 컨설토크라시란 지원적 자문을 의미하는 컨설팅과 라인에서의 정책집행을 의미하는 행정조직(Autocracy)의 합성어로 시장이나 고객에 근거한 정책집행보다 정책중개기관의 공급자위주의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도덕적 해이현상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도입과 관련된 제반 환경 및 과제 분석의 결과, 법·제도의 정비, 허용품목의 제한,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및 정보와 경험부족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사전적인 분쟁 및 갈등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사전적인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크게 협업적 개발을 위한 중개기구의 추진방안과 법제도적 지원 및 ADR과 같은 시장친화적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남북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대응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중개기관의 추진이 네가지 과제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방안이라면 후자의 법제도적 지원 및 ADR관련 대응방안은 기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남북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 제도적인 심각한 차이와 상호 불신의 골에서 복잡하고도 중층적으로 규제된 남북 경제교류의 법 제도적인 정책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전자상거래의 사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북한 주민과의 통신과 협상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이 사후보고의 개념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19] 이에 대한 남북한의 상호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고, 남북 전자상거래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반·출입에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전자상거래의 반·출입에 대해서도 탄력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20] 이와 같이 대북한 접촉관련법 등 법·제도적인 정비와 복잡한 행정절차의 과제에 대응하여 남북 전자상거래의 협업적 개발을 위한 단일화된 정책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남북 전자상거래 도입이 추진되어야

19) 성민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정비방안", 「남북관계 법제 정비를 위한 토론 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한변호사협회, 2004. 10. pp.12-18.

20) 김연철, "바세나르체제와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2001. pp.36-48.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남북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해마다 추진되어왔음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주체의 실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정치적, 학술적 컨설토크라시를 피하고 보다 성과지향적인 협업개발을 위한 단일화된 중개기관의 협업적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남북 전자상거래의 협업적 개발을 위한 추진기관은 크게 상층조직으로 정부의 관계기관 부서장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남북전자상거래 정책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실행하는 "남북전자상거래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중층적 구성이 필요하다. 전자가 이해집단(Stake Holders)의 정책적 조율을 담당하는 한편, 후자는 경제적 동기인 이익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참가 주주집단(Share Holders)의 현장 및 성과지향적 업무추진을 담당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 위원회는 통일부·산자부·정통부 관료, 국회위원 및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남북 각각의 대표단으로 협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상호 정보교환과 정책적 조율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실질적인 전자상거래를 담당하게 될 사업단이라 할 것이다. 사업단은 단순히 위원회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사이트의 개발과 운용, 회원 확보 및 제3의 공인된 인증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전자무역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단의 역할은 남북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고객인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합적 거래 중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며 현장 및 성과지향적 기능과 역할을 갖추어야 한다. 남북 전자상거래는 상호법 제도적인 차이는 물론, 전자상거래의 전문성과 차별적 특성이 더욱 부각되므로 이를 단일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남북 전자상거래의 경로를 관할하는 단일하고도 체계적인 "실천적" 중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특수한 전자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중개기관과는 분명히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기존의 전자무역 중개기관들의 지나친 정책자금의존형 컨설토크라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객관화된 단계적 지원을 통하여 중계기관의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장 및 성과지향의 기준이 필요한 바, 최용록(2002)은 그러한 기준으로 촉매적 역할(Facilitator), 원스톱 통합서비스의 지원(Web Servic Provider), 그리고 단순지원이 아닌 참여적 동반자로서의 역할(Collaborator)을 강조한 바 있다.[21]

따라서 시장기능에 입각한 실질적 주체로서 사업단은 무역의 다양한 기능을 포괄적 서비스로 제공하며 다원화되고 중층적으로 체계화된 중개기능을 중심으로 경험의 통합된 축적과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중개기관(Meta-mediary)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사업단은 마땅히 남북 전자상거래의 주요 고객인 기업들 중에서 대주주로 참여할 경제적 동기 중심의 업무개발이 필수적이며 주주기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개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단의 활동방향과 주요 경영전략을 결정할 위원회와의 공조에 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도 단일화된 시범사업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하여 정보 및 경험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진입장벽과 전략물자와 같은 허용품목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적 갈등 및 분쟁해소로 상

21) 최용록,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Meta-mediary의 기능과 역할",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7권 4호. 2002. pp. 91-108. Meta-mediary란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Meta-와 중개기관을 뜻하는 Intermediary의 합성어로 다기능 통합 중개기관이라 할 것이다.

기 위원회와 사업단을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적 지원과 대안적 해결방안의 사전적 활용과 같은 기능적 지원 방안도 강조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과 같은 국제법규와 연관되어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정도 있으나, 이는 국내법제 정비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대해 관련국들의 설득과 더불어 좀 더 지혜로운 국내법적 대처가 필요하다.[22] 또한 교류협력법제가 전자상거래와 같은 특정 경제협력체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류협력법을 보다 탄력적으로 개정하거나, 남북관계기본법 또는 남북경제협력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23].

북한의 법제에서는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사계약법이 있을 뿐 실제 전자상거래가 법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법적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24] 따라서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UN의 모델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8)과 최근 개정한 전자거래기본법의 관련조항을 남북상황에 적절하게 수용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개념, 계약의 성립시기, 청약의 구속력 등에 관한 법적 규정에 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서는 교류협력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규정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6년 1월 대북 처리기간 및 절차가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나, 이러한 기간 단축 및 신고제로의 전환 등은 아직도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

22) 특히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민족내 교역"으로 차별적인 특성을 강화한다면 바세나르 등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특별한 예외적 인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3) 임성택,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안", 북한법연구회 주최 「2005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 자료집」, 2005. 11. p.27.

24) 이충배 · 정재우, "남북한 교역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7권4호, 2005.12. p.147. 예컨대 1995년 2월 제정된 섭외적 경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규율하는 대외경제계약법이 있다.

이며 보다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위주의 '예외적 개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25] 다만, 사업초기부터 대체입법을 만드는 것은 지나친 규제와 복잡성으로 인해 가능한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해석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수정의 내용이나 중장기적인 입법안의 상세 내용은 구조적 대응방안으로 설명한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목적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기능적 대응방안

아무리 법제도를 완비하고자 하더라도 남북한간 상호 이질적인 법제도적 체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상호간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면 상거래 자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여 2000년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6·15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재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2일에는 전문과 14조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바 있다. 동 합의서에 의해 구성될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신뢰를 강화하고 위험을 축소하며, 남북한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대안적 해결방

25) 2006.1.7일자로 다음과 같이 상당부분 규정완화가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예외적 개방"이 필요하다.
- 북한 방문절차 간소화 :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신원진술서가 인적 사항으로 대체.
- 북한주민 접촉절차 간소화 :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북한주민 접촉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후 신고 가능.
- 반출·반입 승인절차 간소화 : 반출·반입 승인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신청서류도 간소화. 반출·반입 승인사항 변경 승인의 민원처리 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 남북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 남북 협력사업 승인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줄고, 협력사업과 사업 동시 승인 범위도 총 투자액 300만달러 이하에서 1000만달러 이하로 확대.

안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하여 교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6] 이와 같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 상거래라는 특수성과 합의서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대한상사중재원과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27] 따라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포괄적인 대한상사중재위원회와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성과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 전자상거래의 법제도적 특수성이라 함은 미국이나 일본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을 국가간 특수무역으로 이해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민족 내부거래로 이해하려는 정치적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제통상 관련 교역 분쟁은 WTO에 제소하거나 상대국의 법원에 강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 남북간 법적 협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역분쟁을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도 중재와 같은 ADR이 정치적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신속성은 물론, 상호 형평성 있는 탄력적인 분쟁의 해결을 유도하여 시장친화적인 조정제도의 시장촉진 및 조성기능을 강조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전자상거래의 상당 부분이 보이지않는 많은 규제와 제약조건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적인 사안마다 중재조항을 추가하거나 중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사전적 분쟁해결방안으로 남북한 정부당국이 포괄적, 일반적인 중재협약의 체결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출된다. 이와 같은 사전적 분쟁해결방안은 일종의 사회적 보험의 성격을 띠게 되며 남북 전자상거래의 성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무역적 시각에서 보는 특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포

26) 김상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14권 2호, 2004.12. p.5.

27) 최장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작성상의 문제성과 기본원칙",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14권 2호, 2004.12. p.65.

함하게 된다.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남북 상거래의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전적, 포괄적 전자상거래 관련 중재기능을 부속으로 담당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특히 남북전자상거래가 초보적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조직보다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와 같은 단일화된 중재기관에 의해 다루는 것이 경험 및 정보공유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남북 전자상거래는 도입단계이므로 법의 기능인 소비자보호와 규제측면보다는 시장조성과 촉진기능에 초점을 둔 사전 예방적 지원과 사후 보전적 구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28] 특히 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수동적인 알선이나 조정, 중재에 머물지 말고 상사분쟁 해결의 정책수립기관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사업 초기의 남북전자상거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29] 이와 같은 갈등 및 분쟁의 사전적 제도보완과 환경조성을 위한 ADR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용은 남북 전자상거래의 정치적 위험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협업적 기능이라 할 것이다.

Ⅳ. 결 론

그동안 남북교역은 경제적인 목적보다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부침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북한의 경제개방은 기정사실이며, 이러한 개방에 발맞추어 2005년 12월 남북 직통전화의 가설을 계기로 남북 전자상거래의 당위적 요소는 필요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남북전자상거래의 사업적 타당성을

2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소비자보호측면이 강한 대한상사중재원보다 시장 조성 및 촉진이 목적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29) 김상호, 전게서, pp. 17-18.

기초로 남북 전자상거래야말로 특정 경로와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 염려나 남한의 복잡한 규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도 타당성이 높은 경제협력분야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남북합작사업의 협업적 개발과 중개기관의 단일화 및 체계적 구축, 법제도적 지원과 ADR 활성화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중개기구의 추진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통합하고, 시장친화적인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기능중개기관(Meta-mediary)을 통한 심리적, 실질적 진입장벽의 제거가 목적이며, 법제도적 지원 및 ADR의 활성화는 수동적, 사후적 보정수단이 아닌 사전예방적, 시장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남북한상사중재위원회(또는 남북한전자상거래위원회)의 시장조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거래에 따른 분쟁해결을 소비자보호 내지는 규제와 관리측면보다 시장조성과 촉진의 시각에서 한국거래진흥원에 ADR기능을 부여한 것과 같이 남북한 사전적 시장조성 및 촉진적인 ADR기능을 강화해가기 위한 구체적인 분야와 업무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본 연구의 기본 속성상 구체적인 추진전략까지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남북전자상거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가능한 최적경로관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북핵을 둘러 싼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감안해볼 때, 남북전자상거래 사업의 추진을 통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IT기술 및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적 진입장벽은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그다지 문제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갈등과 고려가 더 큰 과제로 등장하는 현시점이야말로 남북한의 특수하고도 유동적인 환경과 경제여건 하에서 본격적인 남북전자상거래의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현황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 11권 8호, 1999. 5.

김상택 · 공영일,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 통신통합", 『인터넷과 북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0.

김상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14권 2호, 2004.12. pp.3-46

김연철, "바세나르체제와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2001.

노승준 · 박종봉,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정책", 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움 발표자료 『인터넷과 북한』, 2000.

남성욱, "인터넷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친(親)북한 인터넷 사이트 현황",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제1호, 2000.

박문우, 『월간 정보격차-북한의 정보화교육을 중심으로 본 남북간 정보격차 현황과 대책』, Vol.1, No.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7.

박정원, 『북한의 IT 법제와 남북 IT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성민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정비방안", 『남북관계 법제정비를 위한 토론 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대한변호사협회, 2004.10.

양승원, "IT FOCUS : 남북 IT 경협 현황과 전망 분석," 『소프트뱅크 리서치 리포트 SBR-01-3-001』, 2001.4.

이충배 · 정재우, "남북한 교역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7권4호, 2005.12. pp.135-156.

임성택,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안", 북한법연구회, 『2005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자료집』, 2005. 11.

제성호, "남북 인터넷 교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문제", 『KISDI 이슈리포트』 03-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7.

최석범, "북한의 IT인프라 현황과 남북한 전자무역의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7권3호, 2005.9. pp.113~133.

최용록, 『전자무역시스템관리』, 헤르메스출판사, 2004.

, "전자무역지원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7권4호, 2005.12. pp.271~285.

,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신생산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논집』 19권 2호, 2005.6. pp.1~16.

,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Meta-mediary의 기능과 역할",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7권 4호. 2002. pp. 91-108.

최장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작성상의 문제성과 기본원칙",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14권 2호, 2004.12. pp.47~72.

홍익풍,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경협",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10,

산업자원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비즈니스백서』, 2005.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실무길잡이』, 1997.

Choi, Yongrok, "A Comparative Study on the Web Marketing Mix Strategy of the Global e-commerce meta-mediary", *Journal of Korea Trade,* Vol.8 No.1, KTRA, 2004, pp. 161-179.

U.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s & Statistics Administration, *Digital Economy 2003.*

ABSTRACT

A Study to promote the EC Collabo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Preemptive Dispute Resolution Policies

Yong-Rok Choi

It has been talked ab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South-North Korean e-market place(e-MP) collaboration project every year since 2003. However, the feasibility as the business has not been dealt with in detail due to the uncertain environment as well as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the project. The research focuses on the workable mechanism of the South-North Korean E-Market Place collaboration project.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results from the newly installed fiber telecommunication network as well as the 1 billion dollars of the trading volu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search analyzes on the capabilities as well as willingnes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e-MP, and concludes with two paradigms of the future tasks. First, the unified but step-wise structure should be made to promote the project by the political committee (South and North Korea EC Committee) and the economical administration body (South and North Korea EC Corporation). Second, the market-oriented resolution system such as South and North Korea Arbitration Body should be involved to create legal environment. Above all, the discussion should be on the main body of e-MP settlement to abolish the psychological as well as practical barriers to enter the South-North Korean electronic commerce.

Key Words : South-North Korean Electronic Commerce, Collaboration, EC Committee, EC Corporation